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3.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8.23.(월)까지 우리부(축산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18부), 중앙행정기관(18청), 중앙행정기관(2원), 중앙행정기관(5처), 중앙행정기관(7위원회), 소속기관(농을), 산하기관(농병),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 각 시도(나 01-18), 생산자단체, 포장 및 유통단체

주무관 이래은 사무관 도재규 축산경영과장 전결 2021.7.9. 박홍식
협조자
시행 축산경영과-4431 (2021. 7. 9.)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47 팩스번호 044-868-0127 / arac@korea.kr / 대국민 공개